

외국인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정 2013. 3. 1. 개정 2013. 7.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한 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 외국인전임교원(이하 “외국인교원” 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외국인교원이라 함은 외국인으로서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대학의 어학교육 및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 외국인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원어민)으로서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다만, 어학담당 전임교원은 학사학위 소지자라 하더라도 강의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상 입국자격을 부여 받은 자 또는 입국자격을 부여받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4조(임용) ① 임용기간,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계약에 의하여 임용한다.

② 외국인교원의 임면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행한다.

③ 외국인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강의의 성실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외국인교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4월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외국인 전임교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계약 신청을 받으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재계약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계약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계약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재계약의 체결은 이 계약기간 만료 1월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⑧ 외국인교원의 임용계약은 별도의 임용계약서에 의한다.

⑨ 외국인교원이 재계약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학기말에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책임수업시간) 외국인교원의 매학기 주당 책임수업시간은 15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기당 매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에는 초과 강의를 지급한다. <개정 2013.7.1.>

제 6 조 (보수) ① 외국인교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별도계약에 의한다.

② 임용기간의 연장 시는 일반 전임교원 보수 인상률 한도 내에서 인상 지불할 수 있다.

③ 임용계약서상의 기재된 내용 이외의 상여금과 수당 등은 지불하지 않는다.

제7조(복무) 외국인교원은 본 대학의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실비지급 등) ① 외국인교원을 초빙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주거료 및 집기구입 등이 예산에 계상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이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외국인교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본 대학의 여비규정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9조(구비서류) 외국인교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 3, 4, 6호는 임용확정 후 제출한다.

1. 인사기록카드
2. 이력서
3. 외국인 등록증명서
4. 여권사본
5. 학력 및 경력증명서
6. 신원증명서(주한 당해국 대사관 발행)

제10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